2024 개정세법

이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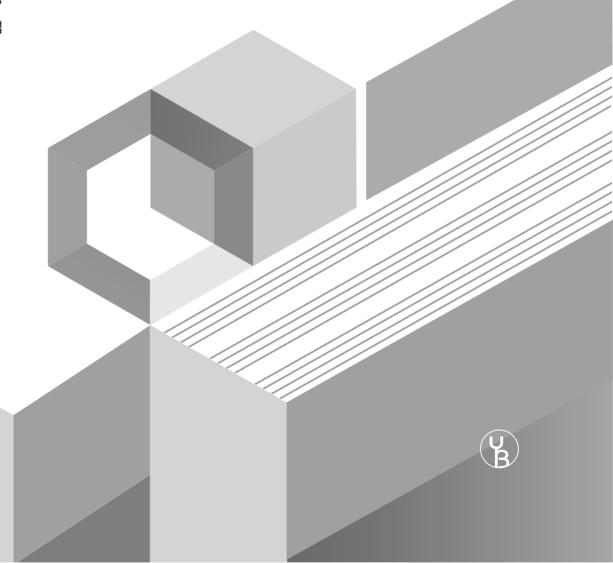
정정운

이승철

유은종

정우승

박지섭



"일러두기"

- 1. 이 자료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를 위한 자료입니다. 2023년 12월에 개정된 세법 법률의 내용과 2024년 1월에 입법예고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 <u>수험 목적과 관련 있는</u> 2024년 시행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2. 2024년 1월에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입법예고된 내용을 기초로 제작된 자료입니다. 추후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경우 입법예고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추후 공포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2024년에 출간되는 교재 등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목적에 필요한 내용만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목에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024년에 출간되는 세법학 교재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의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4. 이 자료는 편저자들의 독창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발표 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편저자들이 수험 목적에 맞게 편집·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2023.7.27.
 -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4.1.23.

목 차

제1부	법인세		··· 5
제 2 부	소득세		•41
제 3 부	부가가치서]]	·73
제 4 부	상속세 및	증여세	83
제 5 부	국세기본법	<u> </u>	•91
제 6 부	국제조세조	조정에 관한 법률	.99
제 7 부	국세징수법	<u>]</u>	103

지 제 부 법인세

익금과 익금불산입

Ι

1. 잉여금의 자본전입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령 §12)

현 행	개정안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자본전입 시 세무처리	□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
○ (원칙) 과세 제외 ○ (예외) 다음을 자본전입 시 익금산입 —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 (좌 동)
〈추 가〉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 면초과금** *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 ** 발행가액 - 액면가액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입법취지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의제배당 재원으로 보는 이유

상환주식이란 발행시부터 일정기간 후에 회사가 이익으로 소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주식이며, 법인세법은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상환주식 발행시에는 액면가액을 자본금으로, 액면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며,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다. 법인이 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한 후, 법인 내 유보되어 있는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는 것은 그 실질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예 상환주식의 발행가액 100(이해를 위해 발행시 액면가액 0 가정), 상환가액 100

상환주식 발행시 : 현 금 100 자본금 0 자보금 100

주발초 100

주발초 자본전입시: 주발초 100 자본금 100

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관련

(1)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법 §18)

종 전	개 정
□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주식의 장부 가액 한도)	□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
 ○ (예외) ①~④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산입(자본 잉여금 중 의제배당과세 대상과 일치) ①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②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③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합병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1% 재평가적립금 등) 	ㅇ (좌 동)
〈추 가〉	─ 3% 재평가적립금*
◆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분할차익 한도)─ 자산평가이익─ 분할감자차익 (1% 재평가적립금 등)	(좌 동)
〈추 가〉	─ 3% 재평가적립금*
〈추 가〉	6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합병·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법인령 §17)
 - □ 합병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한도금액 = 합병차익-(①-②)
 - ①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비과세 자본준비금(3% 재평가적립금 제외)의 합계액
 - ② 합병에 따라 증가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 □ 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한도금액=분할차익-(①-②)
 - ①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비과세 자본 준비금(3% 재평가적립금 제외)의 감소액
 - ②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
 - □ 한도 내 감액배당 시 배당순서:
 3% 재평가적립금 → 이익잉여금,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 비과세대상 자본잉여금
 - □ 준비금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입법취지 3%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을 익금으로 보는 이유

3%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이지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이 아니므로 동 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익금으로 본다.

- 예 甲법인이 상법에 따라 다음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乙주주에게 배당을 함
 - 주식발행초과금 200
 - 자기주식처분이익 300
 - 3% 재평가세율이 적용되는 재평가적립금 400

Z주주가 보유한 甲주식의 장부가액이 1,000이고, 위 배당금 900을 Z주주가 수익으로 인식한 경우의 세무조정은?

- B. (차) 현 금 900 (대) 배당금수익 900
- T. (차) 현 금 900 (대) 금융자산 200 (주발초 분)

배당금수익 700 (자처익 및 3% 재평가적립금 분)

T/A. 익금불산입 금융자산 200 (△유보)

※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 ··········· 배당×(주식 감액)

(2)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법인령 §72)

현 행	개정안
□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규정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신 설〉	: 종전 장부가액-감액배당 받은 금액

(개정이유) 자본을 환급받는 경우 장부가액 조정 명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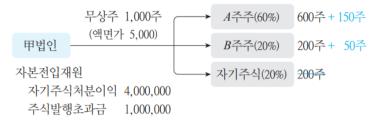
3.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법 §18의2)

종 전	개 정
□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 에서 제외	□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 과세되지 않은 금액 은 익금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등의 수입배당금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산입 O (좌 동)
❸ 법인세 비과세 · 면세 · 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추 가)	 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다음의 의제배당금액 -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 주식등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감자대가 - 자기주식 보유 법인의 의제배당 비재원 잉여금 자본 전입시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 ⑤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 취지에 맞도록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024.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사례 자기주식 보유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를 받은 경우의 의제배당

•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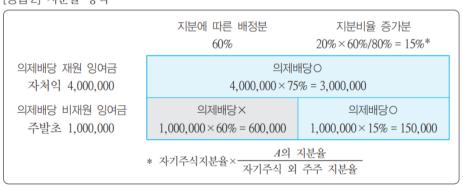


• A주주의 의제배당 [방법 1] 주식수 방식

	지분에 따른 배정분 1,000주×60% = 600주	지분비율 증가분 750주 - 600주 = 150주
의제배당 재원 잉여금	의제비	배당O
자처익 4,000,000(80%)	750주×80	9% = 600주
의제배당 비재원 잉여금	의제배당×	의제배당O
주발초 1,000,000 (20%)	600주×20% = 120주	150주×20% = 30주

- ∴ A의 의제배당액 = (1) + (2) = 3.150,000
 - ① 의제배당 재원분: 600주×5,000 = 3,000,000(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O)
 - ② 의제배당 비재원분 : 30주×5,000 = 150,000(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방법 2] 지분율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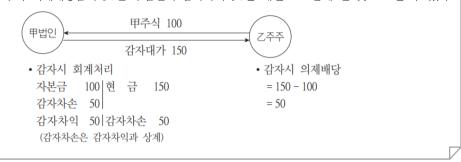


- ∴ A의 의제배당액 = ① + ② = 3,150,000
 - ① 의제배당 재원분 : 3,000,000(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O)
 - ② 의제배당 비재원분: 150,000(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입법취지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감자 시 의제배당

유상감자 시 피출자법인의 감자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감자차익을 재원으로 배당할 경우 주주에 따라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제배당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이중과세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에 甲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 100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Z주주가 주식을 소각당하고 감자대가로 150을 받은 경우 乙주주의 의제배당금액 50은 甲법인의 감자차익 50을 재원으로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추계 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배제(법인법 §68)

종 전	개 정
(2) 2)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 입을 적용하지 않음
(신 설) 	○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개정이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Ⅱ 손금과 손금불산입

1.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법인령 §19)

현 행	개정안
□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 에 대한 손금인 정 요건	□ 손금인정 범위 및 요건 개선
○ 중소·중견기업 ○ 직·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내국법인 및 해외 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의 50% 미만 인 경우 〈추 가〉	 내국법인 (좌 동) (좌 동)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로 납부한 경 우에 한정

〈개정이유〉 손금 인정범위 합리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근로자 출산 · 양육지원금 손금 · 필요경비 인정 명확화**(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개정안
□ 손금 및 필요경비의 범위	□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금 및 필요경비에 추가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부대비용인건비	O (좌 동)
〈추 가〉	○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 *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른 것에 한함

〈개정이유〉 근로자의 출산·양육 지원

3.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명확화(법인령§21)

현 행	개정안
□ 세금과 공과금 손금불산입	□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공과금에서 포함되는
○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범위 명확화
〈추 가〉	— 장애인고 용부 담금

〈개정이유〉 기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이행 확보

입법취지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노동주장관에게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손금 불산입되는 공과금이라고 하였으나 2023년 중 서울행정법원은 손금인정되는 공과금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손금불산입 됨을 명확히 하였다.

4.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현행화(법인령 §23)

현 행	개정안
□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 현행화
○ (대상) 다음 법률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손해 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다음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그 밖의 법률의 규 정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가맹사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파견법」 「기간제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O (좌 동)
〈추 가〉	「남녀고용평등법」 「상표법」 「농수산물품질법」 「식물신품종법」 「대규모유통업법」 「실용신안법」 「상생협력법」 「자동차관리법」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디자인보호법」 「축산계열화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산업기술보호법」 「환경보건법」
(손금불산입액)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	ㅇ (좌 동)
— 다만, 실손해액이 불분명 한 경우는 손해배상 금의 2/3	-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 손금불산입액 = $A \times \frac{B-1}{B}$ A : 지급한 손해배상금 B : 실제 발생한 손해액 대비 손해배상액의 배수 상한

〈개정이유〉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부터 적용

관련사례 징벌적 손해배상금

㈜A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실제 발생한 손해액은 분명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 제3항에 규정된 실제 발생한 손해액 대비 손해배상액의 배수 상한은 5배이다.

•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 : 5억원× $\frac{5-1}{5}$ = 4억원

5.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법인령 §50의2)

현 행	개정안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 손금산입 요건 강화
○ 업무전용보험가입	○ (좌 동)
〈추 가〉	○ 법인업 무용 전용번호판 부착*
	➡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이
	해당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함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착의무대상
	차량인 경우('24.1.1. 시행)

〈개정이유〉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
〈적용시기〉2024,1,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사항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국토부 고시)

- 1. 법인업무용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차량
 - 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승용자동차(다만, 시설대 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승용자동차(다만,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법인이 동일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대여계약을 한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③ 공용차량: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법원과 그 소속기관, 국회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 승용자동차
- 2.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 :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번호판 색상 : 연녹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적용시기**〉 2024.1.1.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

6. 접대비 관련

(1)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 §35, 법인법 §25 등)

종 전	개 정
□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 명칭 변경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
○ (정의) 접대, 교제, 사례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	
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사업자)이	
직·간접적으로 업무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 │ ○ (좌 동)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개정이유〉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명칭 변경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조특법 §136)

종 전		개 정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 손금산입 한도 확대
○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수입금액 구간	한 도	○ (좌 동)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	
500억원 초과	0.03%	
○ 추가 한도		○ 추가 한도 특례 신설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한도) 문화 기업업무도+수입금액별 한도'의─ (적용기한) 2025,12,3	추진비 는 '기본한 의 20% 추가	○ (좌 동) □
〈신 설〉		 ②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 (한도)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는 '기 본한도+수입 금액별 한도'의 10% 추가 * 다만,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 (적용기한) 2025,12,31.

〈개정이유〉 전통시장 지원 강화

〈적용시기〉 20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문화기업업무추진비 대상 확대(조특령 §130)

종 전	개 정
□ 문화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 범위 추가
 ○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 ○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좌 동)
〈추 가〉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용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수목원 및 정원의 입장권 구입 제도시설의 이용권 구입

〈적용시기〉 2023년 6월 12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손익귀속시기 및 자산·부채의 취득과 평가

1.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법인령 168)

 ${\rm I\hspace{-.1em}I\hspace{-.1em}I}$

현 행	개정안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 기준 보완
 상품 등 판매 : 인도일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 :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건설등 용역 제공 : 작업진행률 기준 	ㅇ (좌 동)
* (예외) 중소기업의 1년 이내 건설, 인도기준 계상시 인도기준 허용, 작업진행률 계산 곤란시 인도기준	
(신 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토지개발사업자가 토지 개발 수익·비용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시 완공 전 양도된 토지의 매각 수익에 작업진 행률 기준 적용

〈개정이유〉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 취득가액 명확화(법인령 §72)

현 행	개정안
□ 자산의 취득가액	□ 배출권 거래 관련 취득가액 규정 명확화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제조·생산 등으로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 	ㅇ (좌 동)
무비·운임 등의 합계액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상 무상 할당받은 배출 권은 '0'원	○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및 「 대기관리권역법 」 에 따라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은 '0'원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 (좌 동)

〈개정이유〉 법령 명확화

3. 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법인령 \$72⑤)

현 행	개정안
□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 무증자합병 관련 규정 명확화
〈신 설〉	 무증자합병*시 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조정 *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합병법인 종전 주식의 가액 + 소각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 현금 등 지급액

(개정이유)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4.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1)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법인령 §11, §19)

현 행	개정안
□ IFRS17 적용법인 수익의 범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 준비금 감소 금액 추가
○ 보험감독회계 수익인식에 따라 보험회사 의 책임준비금이 감소한 금액	ㅇ (좌 동)
〈추 가〉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 수 익인식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감소 한 금액
 □ IFRS17 적용법인 손비의 범위 ○ 보험감독회계 비용인식에 따라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이 증가한 금액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 준비금 증가 금액 추가
〈추 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수 익인식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증가한 금액

〈개정이유〉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 합리화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환손실등 손익인식 방법 (법인령 §70)

현 행	개정안
□ 보험계약 관련 손익인식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익인식기준 규정
○ (원칙) 실제 보험료 · 보증료 등이 수입된 날 등	○ (좌 동)
현금주의에 따라 손익인식	
○ (예외)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 회계상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예외 적용대상에 추가
수익 비용으로 인식한 사업 연도에 손익 인식	
〈신 설〉	□ 전환손실* 손익인식 기준
	○ 전환손실 은 최초적용사업 연도부터 5 년간 균등
	하게 손금 에 산입
	*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른 책임준비금에서 종전 회계
	기준에 따른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으 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신 설〉	□ 회계기준 변경 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미경
(C. E)	과보험료적립금 은 회계기준 변경연도에 익금불산입
〈신 설〉	□ 회계기준 변경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변경된 회계
(2.2)	기준에 따른 책임준비금 손금불산입

〈개정이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적용대상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외(법인령 §63·§19의2)

현 행	개정안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 적용대상 조정
○ (대상)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중 시행	○ (좌 동)
령으로 정하는 법인	(2)
—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함	〈삭 제〉
○ (손금산입) 충당금적립금의 Max[1%, 구상채권	○ (좌 동)
발생률]	
○ (귀속시기) 구상채권상각 충당금을 손비로 계상	○ (좌 동)
한 경우	
□ 대위변제금액 손금불산입	
○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금액 중 해당 사업	〈삭 제〉
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 은 구상채권으 로 보	
아 손금불산입	
(신 설)	□ 종전 충당금적립금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유보액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적립
	금 간 차액 은 5년간 균등분할 손금 산입

〈개정이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제도 간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Ⅳ 충당금과 준비금

1.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 864)

현 행	개정안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손금산입	□ 대상법률 추가
 다음의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 취득시 보조금 상당액 손금산입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환경정책기본법」 	O (좌 동)
〈추 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신협공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법인령 §57)

현 행	개정안
□ 보험사업 또는 공제사업 관련 책임준비금 범위	□ 계약자배당준비금에 신협 추가
 ○ 해약환급액 - 수산업협동조합, 무역보험공사, 새마을금고, 건설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 조합의 보험·공제사업의 해약환급액 ○ 보험금지급준비금 ○ 계약자배당준비금 -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 (좌 동)
(추 가)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

〈개정이유〉 공제사업 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V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법인령 §10)

현 행	개정안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공제한도 예외 대상 추가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중소기업 회생계획·기업개선계획 등을 이행 중인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 	O (좌 동)
〈추 가〉	- 조특법 §74 중 수익사업 소득을 전액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 내국법인* * [조특법 §74①] (1) 학교법인·산학협력단 등 (2)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병원 등 (7)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8) 고유목적사업등 지출액 중 장학금 비중이 80% 이상인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9) 공무원연금공단 등 [조특법 §74④] 지방 소재 비영리의료법인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는 분부터 적용

2.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가산세 면제(국기법 §47의3)

종 전	개 정
□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대상	□ 면제대상 추가
① (상속·중여세) 미확정 상속·중여재산, 공제적용 착오, 법인세 과표 및 세액 경정으로 중여의제이익의 변경 등의 경우(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 ② (부가가치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대손세액 금액을 빼지 않은 경우 ③ (소득세) 법인세 과표·세액 경정으로 주식등취득가액이 감소한 경우	(좌 동)
(추 가)	④ (소득 · 법인세) 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

〈개정이유〉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조특령 §21③)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49①)

종 전	개 정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 중소기업 5천만원, 그 외 1억원	□ 적용대상 확대
○「소득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 (좌 동)
〈추 가〉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개정이유) 가산세 한도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4.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농특법 부칙 §2)

종 전	개 정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 유효기간 연장
o 2024.6.30.	0 2034,6,30.

(개정이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 지원

5.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소득령 §117, 법인령 §94)

현 행	개정안	
□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제한세율을 초과 과 세한 세액 포함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법인) 세액(가산세 제외)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제외 	O (좌 동)	
(단서 추가)	- 단, 러시아 가 비우호국 과 조세조약 이행을 중단 하여 제한세율을 초과 하여 과세한 세액 포함	

〈개정이유〉 이중과세 방지

〈적용시기〉 2023.8.8. 이후 외국납부세액부터 적용

연결납세제도 및 그 밖의 법인세

1. 연결납세제도

VI

(1) **연결납세 지분율 완화**(법인법 §2 · 76의8 등)

종 전	개 정	
□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 적용대상 확대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다른 완전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부 보유한 경우 포함 자기주식 제외, 우리사주·스톡옵션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제외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90% 이상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90% 이상 지배하는 경우 포함* (좌 동) 	
□ 연결자법인 추가 · 배제	□ (좌 동)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새로 90% 이상 지배하는 경우 90% 이상 지배가 성립된 날이 속하는 연 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 인 추가 	
연결자법인을 완전 지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연결사업연도부터 배제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90% 이상 지배하지 않게된 경우 그 연결사업연도부터 배제	

- * 연결지배 간접보유 비율 계산방법 규정(법인령 §2⑥ 신설)
 - □ 간접보유에 해당하는 경우 : 연결지배 관계인 내국법인(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 □ 간접보유비율 계산 방법 :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연결가능자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개정이유〉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법인법 §76의10)

종 전	개 정
□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 의무적용기간 예외 허용
○ (제한) 최초 연결납세방식 적용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포기 불가(5년 의무적용)	ㅇ (좌 동)
(신 설)	 (예외) 연결대상법인 확대에 따라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완전자법인이 아 난 법인이 연결 납세 대상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포기 허용
	* 2024.1.1. 이후 연결자법인이 새롭게 연결집단 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 (신고기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ㅇ (좌 동)
(신 설)	 (특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개정이유〉 연결범위 변경에 따른 납세자 과세제도 선택권 부여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법인법 §76의11)

종 전	개 정
□ 연결대상법인 변경 시 변경 신고기한	□ 해산 시 신고기한 추가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ㅇ (좌 동)
(추 가)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개정이유〉 신고 제도 개선

〈적용시기〉 2024.1.1. 이후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

(4)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법인령 §120의18①)

현 행	개정안
□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 양도손익이연자산 범위에 국외자산 추가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 매출채권, 대여금 등 채권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토지와 건축물 	○ (좌 동) ○ (좌 동)
〈추 가〉	 외국법인의 주식등(보유 주식등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

〈개정이유〉 연결법인 간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신설

(법인법 §76의19, 법인령 §120의17④, §120의22, §120의26)

현 행	개정안
〈신 설〉	□ 연결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조정 연결세율)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각 연결법인의 연결조정 후 소득 - 각 연결법인의 연결조정 후 소득에서 공제된 해당 법인의 이월결손금등
	■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의 합계액
	■ 조정 연결산출세액: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에 대해 법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 조정 연결세율: 조정 연결산출세액 ÷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② 결손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연결산출세액 - 조정 연결산출세액) ×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 연결집단 전체 결손금*
	*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 중 해당 법인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한 이월결 손금 제외
	③ 결손금 공제·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진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❶의 금액 + ❷의 금액

(신설) □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는 정산금(결손금을 배분받은 연결자법인이 다음의 정산금을 연결자세표준과 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 지급)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조정 연결세율) ● 연결모법인으로부터 배분받는 정산금(연결모법인이 다음의 정산금을 연결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을 지급한 연결자법인에 지급) = 조정 연결산출세액 ×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연결집단 전체 결손금을 연결집단 전체 결손금을 이원결소금을 및 다른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은 제외 (신설) □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완전자법인만으로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 ○ 연결법인 외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

(개정이유) 연결법인 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입법취지 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결손법인의 결손금을 다른 연결법인이 사용하여 다른 연결법인의 세부담이 절 감된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연결지분율이 100%에서 90%로 완화됨에 따라 결손법인에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결손금의 통산으로 그 결손법인의 소수주주는 결손금 소멸로 인한 미래 법인세 부담액의 증가로 기업가치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결손법인의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결손법인에게는 결손금 사용에 따른 대가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인세법은 결손금을 배분받거나 지급한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① 연결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계산방법과는 다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②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지급하거나 배분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 ① 연결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연결법인별로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한 결손금을 제외한 결손금(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의 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모든 결손금을 공제한 후 납부해야 하는 세액(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까지 공제한 후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결손금의 대가로 정산하도록 한 것이다.
- ②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연결법인이 결손금 공제가 없었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손금이 있는 연결법인별로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정산하도록 한 것이다.

(6)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법인법 §113)

종 전	개 정
□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허용 범위	□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가능 명확화
※ 연결납세의 경우 구분경리 생략규정 없음	
○ 중소기업 간 합병 시	○ 연결모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포함
○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 시	○ 연결모법인이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하
	는 경우 포함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2. 투자상생협력세제(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합리화

(1) 임금증가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조특령 §100의32⑨)

현 행	개정안	
□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 산정방식 구체화	
 ○ 임금증가금액 - 직전사업연도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지급 액 증가액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산정방식 구체화- (좌 동)	
(신 설)	 사업연도별 임금지급액은 매월 말 기준 상 시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 	

〈개정이유〉 임금소득 산정기준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미환류소득 과세시 기업소득 범위 정비(조특령 §100의32④)

현 행	개정안
□ 미환류소득* 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기업소득 산정방법 : 각 사업연도 소득 + 가산항목 - 차감항목	□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 항목 합리화
 ※ 미환류소득:	

 ○ (기업소득 가산항목)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 기부금 한도초과이 월액의 손금산입액 등

 ○ (기업소득 차감항목)

 -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

 - 법령상 의무적립금

 - 이월결손금

 - 기부금 손금한도초과액 등

 -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 한 금액

〈개정이유〉 미환류소득 과세 관련 산정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신탁세제 합리화(법인법 §5, 소득법 §2의3, 법인령 §3의2)

종 전	개 정
□ 신탁소득 과세방식	□ 과세체계 정비
○ (원칙) 수익자 과세 ○ (예외) 일정요건 하에서 수탁자 또는 위탁자 과세	○ (좌 동)
- (수탁자 과세) ①~③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선택 가능	- ①~③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적용
 ① ①→③에 해당하는 경우 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없는 경우(목적신탁) ②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③ 유한책임신탁(사업신탁) 	① (좌 동)
② 수익자 가 2 이상 일 것	〈삭 제〉
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 으로 지배・ 통제하지 않을 것	❸ (좌 동)
- (위탁자 과세)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 (좌 동)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삭 제〉
② 수익자가 부존재 하는 경우	〈삭 제〉
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③ (좌 동)

(개정이유) 신탁재산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024.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종전 수익자 과세 적용 신탁재산은 종전 규정 적용, 개정 이후 수탁자 과세 적용 시부터 개정규정 적용

4.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법인령 §3)

현 행	개정안
□ 비영리법인 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 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
○ 축산업 (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 ·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 축산업 (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 외의 농업
 ○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1) 국민연금사업 2) 특별법 및 인·허가 받은 단체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사업 	○ 연금 및 공제업 → 연금업이나 공제업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5.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법인법 §120의4)

종 전	개 정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기한 	□ 제출기한 명확화
○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 까지	 (분기별 거래명세서)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 (연간 거래집계표)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VII

1.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1) 적용기한 연장

특례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조특법 §10의2)	2023.12.31.	2026,12,31.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조특법 §28의4)	2023.12.31.까지 취득분	2024.12.31.까지 취득분
□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8의2)		
① 과세이연 ② 분할납부	2023.12.31. 2024.1.1.~2026.12.31.	2026.12.31. 2027.1.1.~2029.12.31.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34, §39, §40, §44)	2023,12,31,	2026,12,31.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52)	2023.12.31.	2026,12,31.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조특법 §62)	2023.12.31.	2026.12.31.
□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04의12)	2023.12.31.	2026.12.31.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26∼31, 조특법 §117)	2023.12.31.	2026,12,31.

(2) 적용기한 종료

특례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적용기한	적용기한
§33)	2023.12.31.	종료

(3)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99의13)

현 행	개 정
〈신 설〉	□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 (대상) 내국인 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 을 위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조치 ○ (특례) 손실보상금 익금 불산입
	○ (국네/ 근근모장마 커마 할인함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강화

〈적용시기〉 2024.1.1. 이후 받는 손실보상금 분부터 적용

(4)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조특법 §104의11)

종 전	개 정
□ 신용회복목적회사 (국민행복기금)* 출연 금액 손금산입	□ 적용대상 확대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 보증 등 사업 수행	
○ (적용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 (좌 동)
〈추 가〉	- 금융기관
○ (적용기한) 2024.12.31.	0 (좌 동)

(개정이유) 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20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104의33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 (적용대상) 해외건설자회사를 둔 국내건설모회사
	○ (적용요건) ①~④ 까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지분율 90% 이상)에 지급한 대여금(이자 포함)
	② 회수기일 이후 5년 이상 경과
	❸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에 사용했을 것
	④ 해외건설자회사의 완전자본잠식(순자산 ⟨ 0) 등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 (손금한도) (요건을 충족하는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 -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 외
	순자산 장부가액*) × 손금산입 비율**
	* 자산총액 - 해당 차입금을 제외한 부채총액

** 연도별 손금산입 비율 : 매년 10% 상향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	2033년 이후
비율	10%	20%	30%	?	100%

〈개정이유〉해외수주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대손 위험 완화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의34)

종 전	개 정	
〈신 설〉	□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 (요건) ① & ② & ③	
	① 3년 이상(중소기업 2년) 사업 영위	
	②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26.12.31일까지 양도	
	❸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대체취득*	
	* 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한 날부터 2년 내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 산 양도하거나	
	②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	
	○ (과세특례)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24.1.1. 이후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

(1)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등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13①)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 등*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	□ 적용대상 확대
*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적용대상) ● 창투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 기업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창투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 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을 통하여 벤처기 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③ 기금운용법인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 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추 가)	♣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민간재 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용사인 자산 운용사 및 증권사가 민간재간접벤처투 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 여 취득한 주식
(적용기한) 2025,12,31.	○ (좌 동)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세액감면

(1) 적용기한 연장

특례내용	종 전	개 정
□ 기술 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조특법 §12)	2023.12.31.	2026.12.31.
□ 지역특구 세액감면(조특법 §12의2, §64, §99의9, §121의8, §121의9, §121의17, §121의20~22)	2023.12.31.	2025,12,31,

(2) 적용기한 종료

특례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3)	적용기한 2023.12.31.	적용기한 종료
□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 감면 특례(조특법 §7)	일반주유소가 2022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 시 해당 알뜰주유소의 사업에서 2022~2023 발생 소득에 감면 율 +10%p 적용	적용기한 종료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조특법 §7)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
○ (업종) 작물재배업 등 48개 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좌 동)- (좌 동)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개정이유〉 납세자 혼란 방지

(4)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sim68$)

종 전	개 정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 한 연장
○ (대상)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 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 를 등록 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과세특례) - (법인세) 소득 종류별*로 전액 또는 한도 내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식량작물 외 작물재배업, 어로어업, 그 외 사업소득) 일정 한도 내 	o (좌 동)
 - (배당소득세) 조합원·출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 - (양도소득세) 농어업인이 각 법인에 현물출자시 세액감면 또는 이월과세 	
(적용기한) 2023,12,31.	o 2026,12,31.

(개정이유) 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적용시기〉(법인세·배당소득세)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2024.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5)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4의24, 조특령 §104의21)

종 전	개 정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세액 감면	□ 감면 폭·기간확대 및 업종요건 완화
○ (감면대상) 2년 이상 경영한 국외사업장을 국내 로 이전·복귀하는 기업	○ (좌 동)
○ (감면내용)	○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
 소득・법인세 감면 ●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5년 100% + 2년 50% ②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3년 100% + 2년 50% 	- 감면 폭 및 기간 확대 ❶ 7년간 100% + 3년간 50% ❷ (좌 동)
- 관세 감면 ① 완전복귀: 5년 100% ② 부분복귀: 5년 50% ※ (완전복귀)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부분복귀) 국외사업장 축소・유지	- (좌 동)

○ (업종요건) 대통령령으로 위임	 업종요건을 법률에 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 확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 (적용기한) '24.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적용시기〉 2024.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6)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의17, §121의19)

종 전	개 정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감면내용)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법인세를 감면	ㅇ (좌 동)
○ (감면적용 특구) -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 (좌 동)
〈추 가〉	- 평화경제특구
○ (감면율) 3년 100% + 2년 50% (사업시행자는 3년 50% + 2년 25%)	ㅇ (좌 동)
(적용기한) 2025.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투자 유인 제고 〈적용시기〉 2024,1.1. 이후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7)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의 세액감면 추징사유 합리화(조특법 §121의19)

종 전	개 정
□ 지역개발사업구역·지역활성화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액 추징사유	□ 추정사유 합리화
o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정해제	○ 예외사유 신설
(단서 신설)	- 다만, 공사·개발사업 완료 에 따른 지정해제 시는 추징 제외
○ 투자·고용 요건 미달 ○ 폐업 또는 신설 사업장 폐쇄	○ (좌 동)

⟨개정이유⟩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024.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8)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의33)

종 전	개 정
〈신 설〉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O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O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소득 · 법
	인세 감면 ○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최저한세) 50% 감면기간만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24.1.1. 이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4. 세액공제

(1) 적용기한 연장

특례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조특법 §30의3)	2023.12.31.	2026.12.31.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조특법 §96의3)	2023.12.31.	2024.12.31.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32)	2023.12.31.	2026.12.31.

(2) 적용기한 종료

특례내용	종 전	개 정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2의4)	적용기한 2023.12.31.	적용기한 종료

(3)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주식등 취득기간 확대(조특법 §12의4, 조특령 §11의4)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의 주식등 인수 시 과세특례	□ 주식등의 취득기간 확대
 ○ (과세특례)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 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에 대 해 10% 세액공제 	_ o (좌 동)
○ (지분율 요건) 주식등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 수 법인 지분의 50%(경영권 인수시 지분 30%) 초과 취득	
○ (취득기간) 주식등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 지분율요건 충족시 해당 사업연도 연도 종료일까지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인수 지원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허용**(조특법 §13의2)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1~②를 통해 취득한 주식등	○ ❶~❸을 통해 취득한 주식등
❶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출자	① (좌 동)
2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② (좌 동)
〈추 가〉	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출자
○ (출자방법) 설립시 자본금 납입 또는 7년 내 유상	ㅇ (좌 동)
증자	
(구주매입 제외)	
○ (공제액)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투자시 세액공제 적용
- (❶, ❷를 통한 취득) 출자가액의 5%	- (좌 동)
〈신 설〉	- (❸을 통한 취득) 출자 시 투자금액*의 5%
	+ 주식등 취득가액의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
	가분의 3%
	* Max(출자가액, 모펀드 투자액의 60%)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0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6)

종 전	개 정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세액공제 확대
*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 영 화, OTT콘텐츠	
○ 공제율 - 대/중견/중소: 3/7/10% 〈신 설〉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 (기본공제율) 대/중견/중소: 5/10/15% - (추가공제율*) 대/중견/중소: 10/10/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0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6)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조특법 \$25의7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 액공제
	 ○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 (대상 콘텐츠)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 (제외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 ○ (공제율) 3% ○ (공제시기) 최초 상영·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적용기한) 2025,12,31까지 출자한 경우

〈개정이유〉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투자 지원 〈적용시기〉 2024.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7)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8)

종 전	개 정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중소·중견기업	○ (좌 동)
○ (요건) ①과 ②를 모두 충족	○ (요건) ①과 ②를 모두 충족
● 2022.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① 2023.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3.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2024.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② (좌 동)
○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300 만원 ,	
중견 900만원	
○ (사후관리) 정규직 전환 후 2 년 내 근로관계 종	
료 시 공제세액 추징	
(적용기한) 2023.12.31.	o 2024,12,31.

〈개정이유〉 정규직 전환 지원

(8)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조특법 §104의15, §127)

종 전	개 정
〈신 설〉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공제대상) 과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공제율) 투자 또는 출자액의 3% ○ (적용기한) 2026.12.31.
□ 국가 등의 보조금 등을 통한 세제지원 배제	□ 배제 대상 세제지원 추가
○ (대상 세제지원)	○ 배제 대상 추가
통합투자세액공제상생협력 시설투자 세액공제	○ (좌 동)
〈추 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적용시기〉 2024.1.1.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제 2 부

소득세

_제 1 장

종합소득세

I 총 칙

1. **신탁세제 합리화**(소법 §2의3②)

종 전	개 정
□ 신탁소득 과세방식	□ 과세체계 정비
○ (원칙) 수익자 과세(수익자 사망시 상속인)	○ (좌 동)
○ (예외) (위탁자 과세)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ㅇ (좌 동)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삭 제〉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삭 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❸ (좌 동)

〈개정이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은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함.

〈적용시기〉 2024. 1. 1.부터 시행

종합소득 I

1. 금융소득

(1)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법 §17③)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 배당가산율 조정
●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ㅇ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 종전 법인세 최저세율(10%)을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frac{10\%}{1-10\%}$ ≒11%)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9%)을 기준으로 가산율 산 정 ($\frac{9\%}{1-9\%}$ ≒9.9%)
②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 당세액공제)	ㅇ (좌 동)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사업소득

(1)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기준 명확화(소령 §51③)

현 행	개정안
〈신 설〉	□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 기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

(개정이유) 보험모집인의 원천징수 및 소득세 산정 합리화

(2)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소법 §12)

법 개정내용(소법 §12)

□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고 비과세 한도는 시행 령에 위임

현 행	개정안
□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 소득구분 변경 및 비과세 한도 상향
○ (소득구분) 농어가부업소득* * 축산·고공품제조·민박·특산물제조·양어소득 등	○ 어업소득* * 어로어업·양식어업 소득
이 (비과세 한도) 3,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다른 농어가부업소득과 합산	- 어로어업 소득과 양식어업 소득 합산

〈개정이유〉 양식업계 경영애로 해소, 유사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법 §25①)

종 전	개 정
□ 전세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 과하는 경우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ㅇ (좌 동)
○ (소형주택특례)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소형주택 임대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4) **사용자 본인의 고용 · 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령 §55①)

현 행	개정안
□ 사회보험료 관련 필요경비 범위	□ 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
○ 사용자 본인의 직장·지역건강보험료	○ (좌 동)
〈추 가〉	 자영업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같은 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개정이유〉 자영업자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분부터 적용

(5) 노동조합 기부금에 대한 노동조합 결산 내용 공시 요건 추가(소령 §80)

종 전	개 정
□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기부금	□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요건 추가
①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조합원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② 단위노동조합등의 결산결과 공표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⑤ 단위노동조합등으로부터 조합비를 재원으로 규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교부받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의 결산결과도 공표 * 교부받은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
②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② (좌 동)
③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③ (좌 동)
④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④ (삭 제)

〈개정이유〉 공익단체로 하여금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을 맞추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조합비 운영을 유도

〈시행시기〉 '23.10.1. 이후 납부하는 회비부터 적용

(6)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소령 §81)

현 행	개정안
□ 특례기부금의 범위	□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용역기부 인정 범위 조정
○ 「법인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	0 (좌 동)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 액(①+②)	0 (좌 동)
❶ 봉사일수(=총봉사시간÷8) × 5만원	❶ 5만원 → 8만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	- (좌 동)
②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 료비 등 직접비용	② (좌 동)
〈단서 신설〉	- 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

(개정이유)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7)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소령 §81)

현 행	개정안
□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시 필요경비 산입 한도	□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및 순서 규정
○ (정치자금 및 특례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	 고향사랑 기부금 추가 (좌 동)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 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우리시주조합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일반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 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일반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이월결손금 → 정치 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 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8)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소령 §80①3호다목)

현 행	개정안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신탁금액의 특수관계 요건 명확화
○ 「법령」 §39①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 등 *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ㅇ (좌 동)
 ○ 아래 요건(①+②+③+④)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 	
● 위탁자 사망시 신탁재산이 「상증세법」§16①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	
② 신탁설정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 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ㅇ (좌 동)
❸ 금전으로 신탁할 것	
 ◆ 위탁자가 ●의 공익법인등과 舊「국세기 본법 시행령」 §20(13)*에 해당하는 특수관 계가 없을 것 * 주주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 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주주등이 비영리법 인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함) 	 ◆ 위탁자등*이 ●의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가 아닐 것(위탁 자등이 공익법인 등의 지분의 20% 이상을 보 유한 경우에 한정) * 위탁자 + 위탁자와 국기령 §1의2①에 따른 친족관 계에 있는 자

(개정이유)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 개정 반영

(9) 공익단체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기간 합리화(소령 \$803,5)

현 행	개정안
□ 공익단체의 투명성 확보 의무	□ 제출기한 연장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 류를 제출	○ <u>3개월 이내 → 4개월 이내</u>
결산보고서: 행정안전부장관	O (좌 동)
수입명세서: 관할 세무서장	

〈개정이유〉 납세협력 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

(1)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법 §12)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 비과세 한도 상향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는 급여 	O (좌 동)
○ (한도) 월 10 만원	○ 월 20만원

〈개정이유〉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²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법 §12(3)마, 소령 §10의2)

현 행	개정안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 비과세 소득 확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 (좌 동)
 공무원 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 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좌 동)
〈추 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사립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 아휴직수당으로서 월 150만원 이하의 것

〈개정이유〉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의 과세형평 확보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원양어선 · 외항선박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소령 §16①)

현 행	개정안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 비과세 한도 확대
o 일반 국외 근로자: 월 100만원	○ (좌 동)
o 외항선박·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 월 300만원 → 월 500만원
월 300만원	

(개정이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적용시기〉 '24.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해외문화원 행정직원 등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소령 §16①2호)

현 행	개정안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	□ 비과세 한도 확대
○ 공무원,「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 직원	ㅇ (좌 동)
〈추 가〉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2(5)에 따른 "행정직원"
○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 료재단의 직원	
〈추 가〉	- 산업인력공단의 직원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mark>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제외</mark> (소법 §12, 소령 §17의3, §18)

현 행	개정안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 상금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신 설〉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
	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개) 사용자등의 주주로서 법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내 /개의 자의 친족관계 또는 법인과 경
	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자

〈개정이유〉기술개발 유인 제고 〈적용시기〉'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소령 §17의4)

현 행	개정안
□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ㅇ 사택제공 이익 등	○ (좌 동)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에 소요 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신 설〉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개정이유〉 과세 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소령 §17의4)

현 행	개정안
□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임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제공이익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O (좌 동)
〈추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 담하는 보육비용*
	* 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②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 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25)

〈개정이유〉출산·보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종전 예규 〈서면-2016-소득-5672 [소득세과-1679], 2016.11.8.〉

[질의]

당사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 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어린이집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있음. 당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인집은 위탁보육비를 '어린이집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 후 남은 차액은 근로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어린이집 운영비 등에 충당함. 사업주가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위탁계 약을 체결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위탁비용이 지원받는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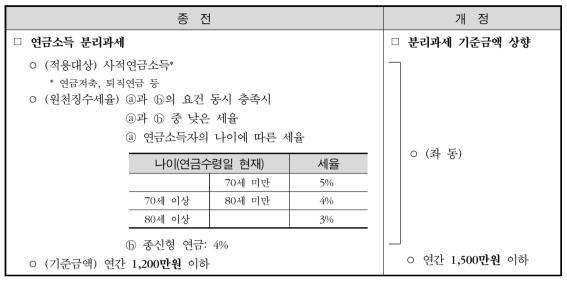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유사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51, 2016.09.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51, 2016.09.0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영육아보육법」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 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보육비는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머목)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2023.12.31. 이전 10만원) 이내의 금액

3. 연금소득

(1)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소법 §14)



〈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된 ISA 전환금액 관련 연금소득 규정 보완(소법 §20의3①)

종 전	개 정
□ 연금소득의 범위(제20조의3)	□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관련 조문정비
○ 공적연금: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	○ (좌 동)
○ 사적연금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관 련 조문정비
- 퇴직소득 과세이연분	- (좌 동)
- 소득세법 §59의3 ①에 따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 금계좌 납입액 ➡ §59의3 ③이 누락됨	- 소득세법 §59의3에 따라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연금계좌 운용수익	- (좌 동)

□ 연금계좌세액공제(§59의3)

○ 연금계좌납입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59의3①)

총급여액	세액공제	세액
(종합소득금액)	대상납입한도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900만원	12%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로 계좌잔액을 연금계 좌로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59의3③)
 - Min(전환금액 10%, 300만원)을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 에 가산

0 (좌 동)

(3)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소령 §40의2)

현 행	개정안
연금계좌납입	
 (좌 동) 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간 1,800만원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고령가구(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ㅇ (좌 동)
□ 주택차액 추가납입 후 사후관리*	□ 사후관리 방식 변경
* 납입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례 발생 시 추가납입액을 연금계좌 불입액으로 보지 않음	
 (추징)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징 수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법 §14 에 따라 합산* * 일반계좌에 납입되었다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 (반환) 추징 후 남은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액을 연금외수령*으로 간주 *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소득 세(15%) 부과 → 분리과세

(개정이유) 추징 및 반환 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

${\rm I\hspace{-.1em}I\hspace{-.1em}I}$

1. 주택연금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령 §108의3)

현 행	개정안
□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 소득공제	고 소득공제 요건 완화
○ (공제대상 소득) 연금소득○ (대상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 (좌 동)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ㅇ (한도) 연 2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 택가액 기준과 동일 ○ (좌 동)

(개정이유) 고령층 노후주거 안정 및 소득확보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상당액부터 적용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소득공제확대 등(소법 §52⑤⑥)

종 전							개 정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0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좌 동)					
0	○ (공제한도) 300만원 ~ 1,800만원			○ 600만원 ~ 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u>상환기간</u> 10년 이상				산화기가 15년 이상 I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또는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고정금리 고정금리 + 또는 기타 비거치식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0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0	기준시가 (6 억원 이하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공제한도) '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령 §112)

현 행	개정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상환 액 소득공제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 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 로 연장하는 경우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 한함 	○ (좌 동)
(추 가)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 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개정이유〉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차입금 연장)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이전)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Ⅳ 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법 §59의2)

종 전							개 경	덩	
□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① 자녀수에 따른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					① 손자녀 포함 , 2인 이상의 세액공제액 인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인 사람의	인원수에	따라 디	라고 함)로서 8세 이상 음 금액을 공제함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공제대상자녀라 고 함) 및 손자녀 로서 8세 이상인 사람의 인원수에 따라 다음 금액을 공제함			서 8세 이상인 사람의	
<u> 1명</u>	2명		3명 이상 의 + 2명 호텔			1명	2명	3명 이상인 경우	
15만원 ———	30만원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15만원	35만원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② 출산·입양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세액공제함									
	첫째인 경우둘째인 경우셋째 이상인 경우30만원50만원70만원				0 (좌 동)			

〈개정이유〉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 및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 조손가정이란 만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조부모로 구성된 가정을 말함

《시행시기》(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2. 의료비세액공제

(1)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소법 §59의4②)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6세 이하인 사람 공제한도 폐지
○ (공제한도)●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사람 추가
② ①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② (좌 동)

⟨개정이유⟩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산후조리원비용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소법 \$59의42), 소령 \$118의5(1)

현 행	개정안
□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 자 공제한도 폐지
○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 한 비용 등	- (좌 동)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요건 폐지
〈추 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공제율) 15%	○ (좌 동)

〈개정이유〉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적용시기〉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기부금세액공제···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법 §59의4)

종 전	개 정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고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 (좌 동)
〈신 설〉	- <u>3천만원 초과</u> : 40%('24,12,31,까지)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4.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령 §116의4)

현 행	개정안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 적용대상 확대
○ (적용대상)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	○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포함
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 (공제금액) 발급 건수당 200원	○ (좌 동)

〈개정이유〉 신규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V 퇴직소득

1.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유 추가**(조특령 §80의3)

현 행	개정안
□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과세	□ 공제금 지급사유 추가*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 사유 추가
	*「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⑤~⑧의 사유가 추가 될 예정
○ 아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 득 과세	○ 공제금 지급 또는 중간지급(중간정산) 시 퇴직소 득 과세
① 폐업·해산, ② 가입자 사망, ③ 법인 대표 자 지위 상실 ④ 60세 이상 & 10년 이상 납입	① ~ ④ (좌 동)
〈추 가〉	⑤ 자연재난으로 영업 불가 ⑥ 사회재난으로 영업 불가 ⑦ 6월 이상의 입원치료 ⑧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
□ 퇴직소득 과세 시 근속연수 산정방법	□ 공제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근속연수 산정방법 추가
○ 공제부금 납입월수 ÷ 12	○ (좌 동)
〈추 가〉	o 중간정산 이후의 납입월수 ÷ 12

〈개정이유〉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적용시기〉 '24.6.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VI 절차규정

1. 원천징수

(1) **사업소득에 소액부징수 예외 추가**(소법 §86, 소령 §149의3 신설)

현 행	개정안
□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 소액부징수 예외 추가
 (내용)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음 (적용 예외*) * 세액이 소액이라도 예외없이 원천징수 	ㅇ (좌 동)
- 이자소득 〈추 가〉	 - (좌 동) - 부법 §26①15호의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통해 얻는 소득

(개정이유) 사업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의약품 조제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소령 §184)

현 행	개정안
□ 의료용역 대가(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원천징수 배제 대상 추가
○ 약사의 조제용역 사업소득 중 의약품 가격은 원 천징수시 제외	 (좌 동) 의사가 직접 조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 배제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약국 없는 지역에서 조
	제, 응급환자·입원환자 등에 대해 조제, 주사제 를 주사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사업소득(의료용역 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소법 §164의5 신설, 소령 §216의5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제출대상자)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 포함)의 사용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 업장
	□ (제출요건) ①내국법인 임직원 또는 ②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등의 행사 또는 지급
	ㅇ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
	① 내국법인 임원등: 내국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 인(국조령 §45①1호)
	②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임원등: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외국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국조령 §45(2)1호, 2호) ㅇ 주식기준보상등 정의
	①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②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
	□ (제출자료) 주식기준보상등 거래내역
	* 주식기준보상 부여·행사·지급내역, 행사·지급이익, 임직원 인적사항 등
	□ (제출시기)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개정이유〉 소득파악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1)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유예**(소법 §164의3)

종 전	개 정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2년 유예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매월 ○ 상용근로소득 : 매 반기 → 매월('24년 시행)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매월('24년 시행) ○ 지연제출 가산세 등 	 ○ (좌 동) ○ 상용근로소득 : 매 반기 → 매월('26년 시행) ○ (좌 동)

〈개정이유〉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연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2)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조특법 §104의5)

종 전	개 정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기간 유예
 ○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 (적용기간) '24.1.1. ~ '25.12.31. 	(좌 동)'26.1.1,~ '27.12.31.

〈개정이유〉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3)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소법 §81의11, 법법 §75의7)

종 전	개 정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 시행시기 유예
(0.125%) 적용요건	
○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1개월 내 제출('24년 시행)	→ 1개월 내 제출('26년 시행)
□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24년 시행)	□ 시행시기 유예(26년 시행)
□ 미제출가산세 한시적 면제대상	□ 대상기간 조정
○ '24.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ㅇ '26.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4.12.31.에 지급하는 소득	'26.1.1.~'27.12.31.에 지급하는 소득

〈개정이유〉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4.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추가(소령 §212의4)

현 행	개정안
□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 발급사유 규정 추가
○ 사업자의 부도·폐업 ○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 (좌 동)
○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추 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주소 등의 국외 이전 또는 행방불명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발 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 매입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소득세 관련 조특법 규정 VII

1. 금융소득

(1)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의7)

종 전	개 정
□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 적용기한 연장 및 전환가입 허용
○ (적용대상) 공모리츠·부동산 펀드 및 동 재간접펀드*	
*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공모리츠·부동산편드에 투자하는 펀드 ○ (과세특례)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9% 분리과세	○ (좌 동)
○ (적용한도) 투자금액 5천만원	
○ (추정)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환매·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23.12.31.	o '26.12.31.

〈개정이유〉 부동산인프라 투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조특법 §88의5)

종 전			개 정	
□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 (대상자) 조합 등*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조특법 시행령) ○ (대상소득) 예탁금·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 예탁금 3천만원 한도 - 출자금 1천만원 한도 ○ (세율 및 적용기한) 		○ (좌 동) - 출자금 2천만원 한도 ○ (좌 동)		
소득발생 기간	'25 _. 12.31 _. 까지	'26.1.1.~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개정이유) 농어민 소득증대 및 조합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시행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의35)

종 전	개 정		
〈신 설〉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 (적용요건)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입주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 에 10년 이상 투자**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투자대상 범위 및 의무 투자비율 및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		
	** 전용계좌를 통해 기회발전특구펀드에 투자		
	○ (특례내용)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0년간 9% 세율로 분리과세		
	o (적용한도) 투자금액 3억원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시행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적용(조특령 §16의2)

법 개정내용(소법 §18의2)

-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에서 적용 배제하는 비과세 규정에서 「소득세법」제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
 - 구체적인 비과세 소득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정안		
〈신	설〉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에서 적용 배제되는 비과세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규정		
		ㅇ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소득공제

(1)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조특법 §16)

종 전	개 정
□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대상 추가
 ○ (적용대상) ●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③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ㅇ (좌 동)
〈추 가〉 ○ (특례)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 (적용기한) '25.12.31.	④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좌 동)○ (좌 동)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 §87)

종 전	개 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적용요건)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O (좌 동)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적용기한) '25,12,31.	- 연 300만원 ㅇ (좌 동)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공제 신설(조특법 §126의2)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 득공 제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좌 동)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구 분	공제율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① 신용카드	15%	
❷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 · 공연 · 미술관 · 박물관 · 영화관람료 등	30%	❸ 도서 · 공연 · 미술관 · 박물관 · 영화관람료 등	30%	
④ 전통시장	40%	('23.4.1.~12.31. 사용분)	(40%)	
⑤ 대중교통('23.1.1.~12.31. 사용분)	40%(80%)	◆ 전통시장	4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u> </u>	('23.4.1.~12.31. 사용분)	(50%)	
		5 대중교통	40%	
		('23.1.1.~12.31. 사용분)	(80%)	
		⑥ '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	10%	
○ (공제한도)		* (좌 동) ** '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서 '23년 신용카 금액의 105%를 차감한 금액 ○ (공제한도)	드등사용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변만원 참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만원	
추가 전통시장 공제 대중교통 300만원	200만원	전통시장		
한도 도서공연등		' ' 대중교통 300만원)만원	
		공제 도서공연등 한도	-	
		연고 '24년 증가분 100만원	<u> </u>	
ㅇ (적용기한) '25.12.31.		○ (좌 동)		

〈개정이유〉 내수활성화 지원

(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조특령 §121의2⑥)

현 행	개정안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제외 금액 추가
ㅇ 국세, 지방세, 전기료 등	
o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좌 동)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이자상환액, 금융·보험용역 관련 수수료·보증료 등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받은 금액
〈추 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
<u> </u>	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개정이유〉 과세 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조특법상 세액공제

(1)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월세액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의3)

종 전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율) 월세액의 15% ·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월세액 한도) 750만원 ○ (적용기한) '23,12,31.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좌 동) 1,000만원 '26.12.31, ※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26.12.31, 까지 연장됨

〈개정이유〉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2**장

양도소득세

1.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가총액 기준 상향조정(소득령 §157, §167의8)

종	종 전				개 정	
□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 '대	주주' 과세기층	은 완화	
○ (판정) 종목별 일정 지	○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보유금액 기준	는 인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 코넥스 4% 이상	- (좌 동)			
- (보유금액) 10억원 여	이상		-	50억원 이상	ŀ	
구분	지분율	보유금액		구분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코스피	조기기	
코스닥	2%	10억원		코스닥	종전과 같음	50억원
코넥스	4%			코넥스	モロ	

〈개정이유〉 연말 주식매도 현상 완화를 위해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가총액 기준을 '10억원 이상' 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였다

〈적용시기〉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2024년 1월 1일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 합리화**(소득령 §154 ⑤)

현 행	개정안
□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계산방법 합리화
○ 보유기간 : ' 취득일~ 양도일'	○ 보유기간 :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 *부터 양도한 날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

〈개정이유〉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합리화하였다. 〈적용시기〉이 규정은 소득령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3.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소득령 §154(2) · §159의4)

현 행	개정안
□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판정 방법	□ 판정기준 합리화
 1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 다음 순서에 따라 판정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 (좌 동) ⇒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 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판단

〈개정이유〉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정기준 합리화 〈적용시기〉이 규정은 소득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2025년부터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합리화(소득법 §95)

종 전	개 정
□ 주택으로 용도변경(또는 주거용 사용)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계산방법 합리화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보유기간 을 '취득일~양도일'로 보아 공제액 산출	 ○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 (① + ②) ① (보유기간 공제율*)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6%~30%) +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12%~40%) * 최대 40% 적용 ②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8%~40%)

《개정이유》 건축물을 장기간 상업용 등으로 사용한 후 양도 직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방법으로 1세 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위 도표와 같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 공제액을 계산하도록 개정하였다.

〈적용시기〉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주택 개념 구체화(소득법 §88, 소득령 §154)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개념	□ '주택'개념 구체화(시설구조상 특성 반영)
○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 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ㅇ (좌 동)
(추 가)	-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로 된 건물'
	*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이유》 종전에는 소득세법상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만 규정하여,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세법에서는 주택법상 정의 규정을 활용하여, 주택의 시설구조상 특성(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등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 정의에 반영하고 구체화하였다.

〈적용시기〉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52의3)

현 행	개정안
□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또는 ❷ 또는 ❸)	□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판정기준 합리화
 ①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③ 30세 미만인 미혼자의 경우(⇒ 가 + 나) 가.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 나.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 (좌 동) ③ 소득 판정기준 구체화 가. (좌 동) 나. 12개월간 경상적 · 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저 작권 수입, 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대가만 포함) 등

〈개정이유〉 1세대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하기 위해서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하였다. 〈적용시기〉이 규정은 소득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조특법 §99조의4)

종 전	개 정
□ 일반주택, 농어촌주택을 각 1채 보유한 1세대가 일반 주택 양도시 비과세	□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확대
○ (대상 농어촌주택) ① &❷&❸	○ 농어촌주택 소재지 확대
●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 시의 동'*에 소재*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등 제외	● '기회발전특구' 포함(읍・면・동 소재 여부, 도시지역, 조정 대상지역,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관광단 지 여부와 무관히 허용)
 ②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한옥 4억원 이하) ③ 2003.8월~2025.12월에 취득 ○ (요건) 농어촌주택 3년 이상 보유 &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ㅇ (좌 동)

《개정이유》 종전에는 농어촌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수도권 읍·면 또는 동으로만 하였으나,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농어촌주택 소재 지역에 기회발전특구(읍·면·동 소재 여부, 도시지역, 조정 대상지역,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여부와 무관함)를 포함하였다.

〈적용시기〉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8.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필요경비에 포함(소득법 §97의2)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취득가액·필요경비 계산	□ 필요경비 합리화		
 ○ (취득가액) 중여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 ○ (필요경비)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여세 	○ (좌 동) □		
〈추 가〉	-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포함		

〈개정이유〉이월과세 적용시 증여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양도가액에 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적용시기〉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소득령 §167의3·§167의4·§167의10·§167의11)

현 행	개정안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배제 1년 연장		
○ 지방저가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	○ (좌 동)		
〈추 가〉	○ '24.1.10.~'25.12.31. 중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수에 서도 제외) 1 소형 신축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2)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3) 준공시점: '24.1.10.~'25.12.31. 4) 주택유형: 아파트 제외 2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85m2 이하 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 비수도권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 24.5.9.까 지 양도 하는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장기임대주택 등	○ (좌 동)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를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하였다.

10.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조특법 §133)

종 전	개 정		
□ 조특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감면한도 합리화		
* 감면세액 총계에 적용			
○ 1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	ㅇ (좌 동)		
*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			
〈단서 신설〉	- 다만,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 1 개 과세		
	기간 내 양도로 봄		
	① 분필한 토지(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		
	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		
	②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 내 나		
	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		
	우자에게 양도		

-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토지를 분필 또는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할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토지의 일부 또는 토지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24년 1월 1일 전에 이루어진 양도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개 과세기간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보는 양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부 부 가 가 치 세

1.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 §11⁽¹¹⁾)

현 행	개정안
□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 산별로 사업자등록	□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예외 대상 추가
○ (예외) 아래의 경우 다수의 신탁재산에 대해 하 나의 사업자등록 허용	ㅇ (좌 동)
- 담보신탁	- (좌 동)
(추 가)	- 「자본시장법」의 무체재산권 신탁업, 「저작 권법」의 저작권신탁관리업, 「기술이전법」 의 기술신탁관리업

〈개정이유〉 신탁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

2. 간편사업자 등록 대상자에 대한 직권등록 근거 신설(부가령 §11⑥)

현 행	개정안
□ 사업자미등록시 세무서장의 직권등록 대상	□ 직권등록 대상 확대
○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사업자	○ (좌 동)
〈추 가〉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

〈개정이유〉 간편사업자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직권등록 분부터 적용

3.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마련(부가법 §60①)

종 전	개 정
□ 사업자미등록 관련 제재	□ 미등록 제재 대상 확대
○ (사유)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사업자 〈 추 가 〉	(좌 동)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 (가산세) 공급가액의 1%	○ (좌 동)

〈개정이유〉 간편사업자등록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추가(부가령 §30(4) 신설)

현 행	개정안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 특례 대상 추가
 아래의 경우로서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봄 	
●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 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 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좌 동)
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 으로 공급하는 경우	
〈추 가〉	4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용역의 완료가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

〈개정이유〉 해상운송 사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5.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①3, 3의2)

종 전	개 정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 도시철도공사, ③국가철도공단, ④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⑤한국철도공사	ㅇ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o '26,12,31,
□ 민간투자사업자가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사 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 기반시설의 건설용역	0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o '26.12.31.

(개정이유) 도시철도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6. 미가공식료품 등에 대한 면세 적용기한 연장(부가칙 §24, §37)

종 전	개 정
□ 단순가공식료품(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 등)으로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	 적용기한 연장
는 경우 과세. 다만 '23.12.31.까지는 면세	'25.12.31.까지는 면세
□ 미가공 식료품(커피·코코아두는 제외)의 수입은 면세	 적용기한 연장
다만, '23.12.31.까지는 수입하는 커피·코코아두는 면세함	'25.12.31.까지는 면세

〈개정이유〉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7.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41③ 신설)

현 행	개정안
□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 범위	□ 면세 대상 확대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의 면적 중 넓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	
- 주택의 연면적 -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외 10배) 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O (좌 동)
〈추 가〉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 민주택규모 이하 한정)을 분양받은 자에게 제 공하는 토지의 임대
	* 토지 임대 범위는 기존 규정 적용

〈개정이유〉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종 전	개 정
□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	□ 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 (좌 동)
5 기타 질병 예방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 으로서 농식	⑤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
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	- (좌 동)
〈추 가〉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 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개정이유〉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지원 **〈적용시기〉** '23.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어린이집 운용(위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6①(8) 신설)

현 행	개정안
□ 면세하는 교육용역	□ 대상 확대
○ 다음의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 -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 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청소년수련시설 - 산학협력단 -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좌 동)(좌 동)
-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추 가〉	- 어린이집(위탁운영 포함)

(개정이유) 출산·보육 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부가령 §42(1))

현 행	개정안
□ 개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면세요건 명확화
 ○ (대상) 저술·음악·무용·배우·가수·감독· 직업운동가 등 ○ (요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 	 (좌 동)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개정이유) 인적용역의 면세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부가령 §42(2)아자 신설)

현 행	개정안
 개안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 면제 범위 확대
 (대상)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 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ㅇ (좌 동)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등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외국 차관자금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O (좌 동)
〈추 가〉	- 근로자파견·공급 용역 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 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 용역

〈개정이유〉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부가령 §71의2②)

현 행	개정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 청기한 	□ 신청기한 확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 년 이내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부가령 §71의2[®] 신설)

현 행	개정안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 발급사유 규정 추가
○ 사업자의 부도·폐업 ○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O (좌 동)
o 그 밖에 시행령 <u>으</u> 로 정하는 경우	
(추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주소 등의 국외 이전 또는 행방불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발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①)

종 전		개 정
ㅁ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 적용기한 연장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공제율		
- 음식점업		- 음식점업
구 분	공제율	구 분 공제율
1 연매출액 4억원 이하	9/109	① 연매출액 4억원 이하 9/109
('23.12.31.까지)	9/ 109	('26,12,31,까지)
2 연매출액 4억원 초과	8/108	② 연매출액 4억원 초과 8/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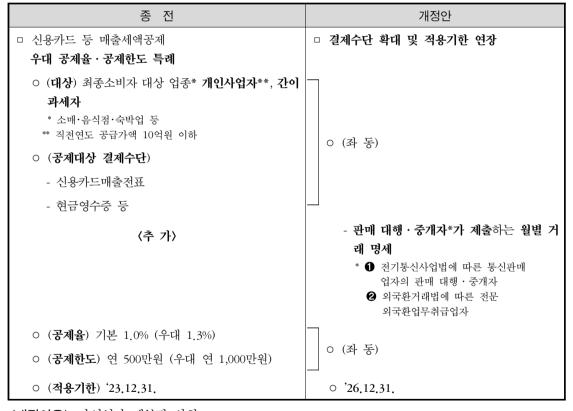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15.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종 전	개 정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 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ㅇ (좌 동)
○ (공제세액)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 공제율(3/103) ○ (적용기한) '23.12.31.	o '25.12.31.

(개정이유)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지원

16.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부가법 §46, 부가령 §88④(4) 신설)



〈개정이유〉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부가령 §89①)

현 행	개정안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 적용대상 확대
○ (적용대상) 직전 연도 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3 억원 미만 인 개인사업자	포함
(공제금액) 발급 건수당 200원	○ (좌 동)

〈개정이유〉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부가령 §91의2①)

현 행	개정안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 납부유에 적용요건 완화
* 수입 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신 고시 정산납부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 한정) ②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중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③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 최근 2년간 관세·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을 다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 체납세액 납부 시제외 	O (좌 동)
⑤ 최근 2년간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6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 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⑥ 3년간 → 2년 간

〈개정이유〉 납부유예 적용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 발급분부터 적용

19.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부가법 §70④·⑤)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 포기신고	□ 포기신고 철회 근거마련
○ (대상)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 (효력) 3년간 일반과세자 적용	○ (좌 동)
(신 설)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토록 근 거 마련

〈개정이유〉 간이과세 포기 신고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제4부

상속세 및 증여세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상증령 §15)

현 행	개정안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상속인의 가업종사	○ 업종 유지요건 완화
- 상속인이 대표이사 로 종사	- (좌 동)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중분류 → 대분류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을 것	- (좌 동)
○ 자산 유지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 지분 유지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좌 동)
○ 고용 유지	
-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개정이유〉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업종 유지요건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 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하였다.

〈적용시기〉이 규정은 상증령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15)

현 행	개정안
□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 상속인 요건 완화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좌 동)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 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적용 배제
□ 상속인 가업영위 사후관리 요건	□ 요건 완화
○ 상속인이 대표이사 로 종사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적용배제
*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업종으로 변경하는 요건은	*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업종
적용	으로 변경하는 요건은 적용
□ 기타 사후관리 요건	
○ 자산 4 0 % 이상 처분 금지	
○ 상속받은 지분 유지	○ (좌 동)
○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개정이유〉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회발전투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 리 기준을 완화하였다.

〈적용시기〉이 규정은 상증령 시행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84 2024 개정세법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연부연납기간 확대(상증법 §71)

현 행	개정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연부연납기간 확대
○ (연부연납 기간)	
- 일반 증여재산 : 5년	- 일반 증여재산 : (좌 동)
- 가업승계 특례 적용 증여재산 : 5년	- 가업승계 특례 적용 증여재산 : 1 5년

- 〈개정이유〉 가업상속의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기간(20년 또는 10년 거치 10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 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기간의 범위를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다.
- 〈적용시기〉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24년 1월 1일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의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조특법 §30의6, 조특령 §27의6)

현 행	개정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사후관리 완화
○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	
○ (특례한도)	
<u>가업영위기간</u> : 한도액	○ (좌 동)
- 10년 이상 : 300억원 - 20년 이상 : 400억원 - 30년 이상 : 600억원	(4 8)
○ (기본공제) 10억원	
○ (세율) 10%	
- 단, 60억원 초과분은 20%	- 단, 120억원 초과분은 20%
○ (사후관리) 5년	○ (좌 동)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중분류 → 대분류

-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하기 위해서 10%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하고, 업종 유지요건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 로 완화하였다.
- 〈적용시기〉 저율과세 구간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한편 업종 유지요건 완화 개정규정은 조특령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종 전	개 정
□ 증여재산 공제*	
* 중여자별 아래 금액을 중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제외 이 배우자: 6억원 이 직계존속: 5천만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 2천만원) 이 직계존비속: 5천만원 이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좌 동)
〈신 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증여자) 직계존속 ② (공제한도) 1억원 ③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④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즉 반환특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 내 증여자에게 반환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반환특례 사유 ① 약혼자의 사망 ② 민법(제804조)의 약혼해제 사유 ・ 차격경지 이상의 형 선고받은 경우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불치병 ・ 그 밖의 중대한 사유(혼인 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 가산세는 면제*하되 이자상당액** 부과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한 경우

	*가산세 면제 범위 ①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 단,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 ②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 증여세액 × ① × ② ① 중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고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② 1일 2,2/10,000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증여자) 직계존속
⟨신 설⟩	2 (공제한도) 1억원
	❸ (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 통합 공제한도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1 억원

〈개정이유〉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 를 받는 경우에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도입하였다. 한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산 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출산증여재산공제를 신설하였다.

〈적용시기〉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6.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 추가(상증법 §42의3)

종 전	개 정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재산 취득 사유 추가
○ 증여세 부과대상 재산 취득 사유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좌 동)
③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③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중여받거나 차입한 자금 또는 ①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
	산을 취득한 경우

〈개정이유〉 재산 취득 후 재산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였다. 〈적용시기〉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7.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상증법 §48 · §78, 상증령 §38 · §41의2)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 공익목적사 업 지출 의무	□ 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및 위반시 제재 합리화
 의무지출액 출연재산 가액의 1% * 주식 10% 초과 보유 공익법인 : 3% 	○ (좌 동)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 단, 상증법상 평가액의 70% 이하인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 	○ 상장주식 가액 산정기준 변경 - (좌 동)
-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 최근 3개년도 → 5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지출실적 산정기준	○ ① or ② 선택 가능
- 당해 과세연도 사용 실적	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당해 과세연도 + 직전 4과세연도의 5년 평 균 사용실적
○ 위반시 제재	○ 제재 합리화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및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지출의무 관련 제도 합리화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개정하였다.

《적용시기》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한편 2024년 1월 1일 전에 상속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공익법인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또는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중 선택 적용한다.

8. 서화·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52②)

현 행	개정안
□ 서화·골동품 보충적 평가방법	□ 평가방법 개선
①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① 2인 이상의 전문가 → 2 개 이상의 전문기관
②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Max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 《단서 신설》	 ② 평가방법 개선 (좌 동) 다만,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 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 (특수관계인 간에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에한해 적용)

〈개정이유〉 보충적 평가방법 합리화 및 조세회피 방지하기 위해서 서화·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 법 개선하였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상증령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5**부 국세기본법

1. **글로벌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추가**(국기법 §26의2⑥7 신설)

종 전	개 정
□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 특례대상 확대
○ (특례내용) 일반적인 부과 제척기간 만료시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부과처분 가능	
- 조세불복 결정·행정소송 판결 확정시: 확정일부 터 1년 - 상호합의: 합의 종료일부터 1년 - 경정청구, 국조법상 경정청구· 조정권고시: 경 정청구일·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내 -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 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변경되는 경우: 확정판결 일부터 1년 - 부과제척기간 내에 외국과세 당국에 정보교환 요 청 시: 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ㅇ (좌 동)
〈추 가〉	-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변경 시 : 과세 당국이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국기법 §28)

종 전	개 정
□ 소멸시효 중단 사유	□ 소멸시효 중단 제외사유 추가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	(좌 동)
〈 단서 신설 〉	-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 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압류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사유를 명확화

3.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국기법 §35①)

종 전	개 정
□ 소유자 변경 후 매각 시 국세우선의 원칙	□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
○ (원칙) 현 소유자의 국세체납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은 종전 소유자와 설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미적용	○ (좌 동)
* 국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일 중 빠른 것부터 변제	
 ○ (예외) ● 해당 재산에 대한 가장 빠른 권리설정일보다 법정 기일이 앞서는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한도 로 국세를 우선 징수 	
〈추 가〉	 한도 내에서 국세우선원칙을 적용하여 법정기일이 권리설정일보다 빠른 체납 국세만 우선 징수
현 소유자로 변경된 이후 발생한 당해세인 종부세	② (좌 동)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4. 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국기법 §47의3④, §47의4③, 국기령 §27의5)

종 전	개 정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제외	□ 적용제외 확대
○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로 인해 상 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좌 동)
〈추 가〉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 적용제외 확대
 상속재산(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증여세액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 	ㅇ (좌 동)
* 상속·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	* (좌 동)
〈추 가〉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 이 발생한 경우

(개정이유) 증여재산 평가차이로 인한 가산세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법 또는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5.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국기령 §27의2)

법 개정내용(국기법 §47의3)

-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추가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과소신고가** 산세 적용 제외
 - → 구체적인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정안
〈신 설〉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
	 시설인정* 받을 것을 조건으로 사전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 받았으나, 해당 조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조특령 \$9⑤)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 시설 인정 ** 조특법 \$21⑥ 후단에 따른 사전 세액공제 신청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49①)

종 전	개 정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 적용대상 확대
* 중소기업 5천만원, 그 외 1억원	
○「소득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O (좌 동)
〈추 가〉	○ 「법인세법」 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개정이유〉 가산세 한도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7. 조세불복 소액사건 금액기준 완화(국기령 §53¹/₄), §62)

현 행	개정안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 치지 않는 소액사건 금액기준	□ 기준 확대 및 상향 입법
○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시행규칙)	○ 5천만원 미만(시행령)
□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 심판관 단독 심리·결정이 가능한 소액사건 금액기준	□ 기준 확대
○ 청구금액 3 천만원 미만 (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	○ 5 천만원 미만 (지방세는 2 천만원 미만)

〈개정이유〉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 분부터 적용

8.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국기법 §59의2①, 국기령 §49의2)

종 전	개 정(안)
□ 조세불복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신청 허용
○ 5천만원 이하 신청·청구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청구	0 (좌 동)
○ 종합소득금액 및 재산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 재산가액 5억원 이하	
ㅇ 법인이 아닐 것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개정이유〉 조세불복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4.4.1.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9.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확대**(국기법 §67)

종 전	개 정
□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	□ 임기 확대
ㅇ 임기 3년	○ (좌 동)
○ 1차례 중임 가능	○ 1차례 연임 가능

〈개정이유〉 조세심판의 전문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1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합리화(국기법 §78)

종 전	개 정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 구성 인원 합리화
○ 조세심판원장	○ (좌 동)
 상임조세심판관: 전원(8인) 비상임조세심관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 	○ 상임 및 비상임조세심판관: 조세심판원장이 회의에 따라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
	- 다만,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구성

〈개정이유〉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구성하는 분부터 적용

11. 과세정보 요구 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국기법 §81의13)

종 전	개 정	
□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	
○ 과세정보 요구는 문서 *로 함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 	
*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으로 규정 중	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 한 문서	

〈개정이유〉 과세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

12.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사유 명확화(국기법 §81의15(5))

종 전	개 정
□ 과세예고통지 등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청구의 결정 구분	□ 심사하지 않는 결정 사유 명확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 ○ (좌 동)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추 가〉	-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개정이유〉 과세전적부심사 규정 합리화

1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 명확화(국기법 §85의15)

종 전	개 정
□ 과세전적부심사 적용 제외사유	□ 청구요건 완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 는 경우	ㅇ (좌 동)
〈 단서 신설 〉	-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은 제외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14. 과세전적부심사시 재결청 선택권 확대(국기령 §63의15①)

현 행	개정안	
□ 국세청장 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는 사유	□ 청구 사유 완화	
 ●법령 관련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로 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②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③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와 관련된 과세예고통지 	○ (좌 동) □	
 ●~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중 청구금액 10억원 이 상인 경우 	○ 10억원 → 5 억원	
○ 감사원법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 로서 시정요구 전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 를 받지 못한 경우	ㅇ (좌 동)	

〈개정이유〉 조세불복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제6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등(국조법 §16)

	종 전	개 정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 개발	별·통합기업보고서 7	세출기한 단축(12개월
			6개월)	
○ 제출의무		0	(좌 동)	
보고서	제출의무			
개별기업보고서	연 매출 1,000억원,			
	국외특수관계자 국제거래			
0 11 11 11 1	500억 초과 대규모법인			
 국가별보고서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1조원 초과			
○ 제출기한		0	제출기한	
보고서	제출기한		보고서	제출기한
개별기업보고서	사업연도 종료 후		개별기업보고서	사업연도 종료 후
통합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6개월 이내
국가별보고서	14/미런 17미		국가별보고서	(좌 동)
┃ ┃ □ 국제거래명세서 등* フ	ll출 의무	ㅁ 국7	세거래명세서 등을 가	별기업보고서의 부표
*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형티	대로 제출하는 대규모	법인도 별도 제출
○ (제출의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		0	(좌 동)	
○ (세 물의 구) 국외국구선계인과 국제기대를 하는 답 세의무자				
- 단,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대규모법			〈삭 제	>
인은 제외				
* 대규모법인은 해당 자료를 개별기업보고서의 부		* 7	별기업보고서 부표형태	로 제출 → 개별 규정・
표형태 로 제출		<u>ک</u>	식에 따라 제출	

0 (좌 동)

〈개정이유〉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국조법 §42⑥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운영 근거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사항의 협의 를 위해 체약상대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 구
	성운영 가능
	- 조세조약 적용 및 해석 에 관한 협의 필요사항
	- 양국 세법 상 중요 변경사항 통보
	- 기타 조세조약 이행 및 국제조세 분야 협력 관련 사항

〈개정이유〉 조세조약 이행 관리 및 국제조세 협력 강화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국조법 §54)

종 전	개 정
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
단기거주 외국인 거주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단기거주 외국인 거주자, 국제기관의 종사자* *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 기관 종사자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며 근로・퇴직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에 한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
 ○ 금융회사 등 ○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 능한 기관 	*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 ○ (좌 동)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국조법 §58, §59, §91)

종 전	개 정
〈신 설〉	□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
	● (신탁설정 · 이전 시) 거주자 ·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 제출
	② (신탁설정 이후)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
	제*하는 경우 →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
	* 위탁자가 신탁해지 권리,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등
	□ (제출내용)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 신탁계약 기본정보 , 신탁재산가액* 등
	* 시가 또는 취득가액(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
	□ (제출기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과태료)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

〈개정이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을 통한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26.1.1. 이후 자료 제출)

다만, '24.12.31. 이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하여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중에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자료 제출

5.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국조법 §60 ~ §86)

2024. 1. 1.부터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공개특강에서 설명 예정

제 7 부

국세징수법

1.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절차 신설(국장법 §43③, §56의2, §56의3)

종 전	개 정
〈신 설〉	□ 물리적 점유가 불가능한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규정 신설
	○ (압류방법) 예탁자등*, 계좌관리기관등**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
	* 예탁자등: 예탁자 또는 예탁결제원 ** 계좌관리기관등: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 *** 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 (압류효력) 예탁자등, 계좌관리기관등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은 체납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대체 등 처분 금지
	○ (압류효력 발생시기) 압류통지서가 예탁자등, 계좌관리기관등 또는 명의개서대 행회사 등에 송달된 때
	○ (압류 통지)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

〈개정이유〉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2.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 통지 규정 정비(국장법 §55④)

종 전	개 정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가상자산 압류 사실 통지 추가
 ○ 압류의 등기·등록을 관할등기소 등에 촉탁한 경우 ○ 제3채무자*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한 경우 *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 	○ (좌 동) □
(추 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 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개정이유〉 체납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4.1.1. 이후 이전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3.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국정법 §57)

종 전	개 정
□ 압류 즉시해제 사유	□ 압류 즉시해제 사유 추가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좌 동)
〈 신 설 〉	○ 압류금지재산 *을 압류한 경우
	*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 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포함
	○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 (좌 동)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압류 즉시 해제 사유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부터 적용

4. 취득이 제한되는 압류재산의 매각 절차 합리화

(1)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국장법 \\$80)

종 전	개 정
□ 압류재산 매수인의 제한	□ 제한 범위 확대
○ 체납자 ○ 세무공무원 ○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 등	○ (좌 동)
〈추 가〉	○ 다른 법령에 따른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각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매각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 **공매보증 반환 대상 확대**(국정법 §71)

종 전	개 정
□ 공매보증 반환 대상	□ 대상 확대
○ 개찰 후: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매수신청인 ○ 체납액 완납으로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	○ (좌 동)
우: 매수인 ○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차 순위 매수신청인	
〈추 가〉	 매수신청인이 압류재산 취득 자격이 없어 매각불허 결정을 한 경우: 매수신청인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각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분부터 적용

5.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국장법 §84의2)

종 전	개 정
〈신 설〉	□ 채권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 납부 허용
	○ (신청대상)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 를 가진 채권자
	* 저당권·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
	○ (신청기한) 개찰 일 이후 매각결정기일 전 까지
	○ (상계결정) 매각결정기일에 상계 여부 결정*
	*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등 사실상 차액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차액납부 불허
	○ (납부방법) 배 분계산서 원안 에 따라 납부할 차액을 계산하고 배분기일까지 차액
	납부
	○ (이의제기) 배분계산서 원안에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 배분기일 까지 이에 해당하
	는 대금 납부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수 부담 완화 및 강제징수 기간 단축

〈적용시기〉 '24.7.1. 이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상향입법 및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국징법 §106②·③, 국징령 §79)

종 전	개 정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시행령)	□ 민간위원 구성 상향입법 (법률)
 ● (지방국세청 위원회) 해당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세무서 위원회) 해당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사람 	○ (좌 동) * 민간위원 자격 (시행령) 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자 또는 ② 법률·회계·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제계 종사자
(신 설)	□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개정이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